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1 발의연월일: 2020. 8. 25.

발 의 자:김한정·김용민·홍기원

윤후덕 • 이상헌 • 전혜숙

김경협 · 정춘숙 · 정성호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사·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현행법은 해당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 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 적 규정을 마련('15.12.29)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 반대와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유효기간 만료일('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670호 부칙제2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시설(2017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지를"을 "부지(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성비용을 기부채납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를"로 한다.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53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중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를 "제11조제1항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
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지 정비사업)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u>시설</u>	시 <u>설</u>
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	<u>(2017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u>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u>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u>
시행할 수 있다.	<u>한정한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	③
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	
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	
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	
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	
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u>부지를</u> 기부채납하여야한다.

④ ~ ⑧ (생 략)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의2, 제 제 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 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 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성
비용을 기부채납 금액에 포함하
<u>여 산정한다)를</u>
,
④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u>제11조제1항</u>
제5호의2
다만,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현행과 같음)